##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63

발의연월일: 2024. 7. 8.

발 의 자: 민형배 · 윤준병 · 이상식

김태년 • 박홍근 • 이성윤

김원이 · 이수진 · 황정아

이기헌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자합니다.

현행법은 순국선열, 애국지사를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나 항거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로 규정합니다.

이중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에 관한 해석이 모호합니다. 국가보훈부는 독립유공자의 서훈 등 공적심사 내규에서 국권침탈을 을미사변으로 한정합니다. 이 이전에 발생한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 자는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했음에도 독립유공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적 합한 예우를 위해 독립유공자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 옵니다.

이에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 범위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1차와 3차 참여자는 이미 독립유공자 범위에 포함됩니다.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정의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1894년 9월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받은 사람'을 포함했습니다.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제4조).

법률 제 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및 제2호 중 "자로서"를 각각 "사람(「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학농민혁명참여자로서 1894년 9월 2차로 봉기한 혁명참여자를 포함한다)으로서"로,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제4조(적용 대상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	
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	1
(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	
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	
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	
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	
거로 인하여 순국한 <u>자로서</u> ,	사람
그 공로로 건국훈장(建國勳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
章)・건국포장(建國褒章) 또	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
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u>자</u>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
	학농민혁명 참여자로서 1894
	년 9월 2차로 봉기한 혁명
	참여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사람
2.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2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	
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	

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 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u>자로서</u>, 그 공로 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u>자</u>

-----사람(「동학농민 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 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 호에 따른 동학농민혁명 참 여자로서 1894년 9월 2차로 봉기한 혁명 참여자를 포함 한다)으로서-----